

정재원씨 징용피해소송 관련 LA민사지법서 기각요청 거부

사실심리 등 속개 가능

미국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기업에 제기한 징용피해소속 기각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미 법원에 계류중인 징용소송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재원(79)씨를 비롯해 신혜원, 케네스 한(한국명 태호), 배리 피셔 변호사 등 미국내 한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17일 라디오코리아 도산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4일 LA 민사법원에서 내린 기각 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명령은 유대인 집단학살 보상케이스와 달리 대일 전쟁범죄 피해 소송에서 미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데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미국내 징용소송과 전쟁포로 강제노역 케이스를 모두 기각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라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유대인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배리 피셔 변호사는 이번 법원 명령으로 일

본과 미국에서 중단됐거나 미결상태에 놓여져 있는 수십 개의 징용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피터 리크만 LA 민사지법 판사는 14일 한인 정씨가 제기한 징용피해소송을 재판절차 없이 기각해달라는 일본 다이헤이오 시멘트의 요청을 거부하는 명령서를 양쪽 변호인단에 통보했다.

리크만 판사는 18페이지 분량의 명령서에서 ▶1951년 미일강화조약 체결당시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라 적용대상이 아니며 ▶1965년 한일협정은 양국 해석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미 법원이 수용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 징용 소송은 LA 민사지법에서 사실심리와 재판준비 증거수집 등이 계속 가능하게 됐다.

장연화 기자

<cyha@joongangusa.com>